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1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12월 19일  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기본계획 대신 매년 수립되는 교육부의 실행계획만을 교육청의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
- 따라서 교육부의 실행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제4항에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의 고려대상에 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추가함(안 제6조제4항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”  
을 “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,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  
사회 실행계획” 으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 ① ~ ③ (생략)	제6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제6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 ① ~ ③ (원안과 같음)
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중합계획 및 <u>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</u> 을 고려하여야 한다.	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중합계획 및 <u>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</u> 을 고려하여야 한다.	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중합계획 및 <u>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,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</u> 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학부모,” 를 “보호자 및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” 을 “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,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” 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3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

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” 를 “그 밖” 으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하고, 제15조,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4조, 제15조 및 제19조로 하며,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등의 활용 지원)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 지능정보기술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, 교육 프로그램, 교육용 정보통신기기(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) 또는 교구 및 교재의 보급, 전문인력 확보, 재정 지원, 교직원 연수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 제고)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능정보사회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윤리원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1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 촉진 및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정보화 추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4조(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학생, <u>학부모</u>,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구성원(이하 “교육관계자”라 한다)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· 시행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6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<u>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</u>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</p>	<p>제4조(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)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 <u>보호자</u> 및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정보화 기본계획 수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교육부의 정보화 기본계획</u>, 같은법 제7조에 따른 <u>교육부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</u>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

1. 2. (생략)

3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

④·⑤ (생략)

제12조(회의 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(생략)

⑤ 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, 학생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

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조정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회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<삭제>

④ 그 밖-----  
-----

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
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소위원  
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심의  
· 조정에 참여한 위원 또는 전문  
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 
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 
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감 소  
속 공무원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  
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
아니하다.

<신 설>

제15조 · 제16조 (생 략)

<신 설>

-----  
-----.

<삭 제>

제16조(학교 교육활동에서의 지능  
정보기술 등의 활용 지원) 교육감  
과 각급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  
동에 있어 지능정보기술 등이 적극  
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  
업, 교육 프로그램, 교육용 정보통  
신기기(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  
육 활성화 기본법」 제7조제1항  
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  
기를 말한다) 또는 교구 및 교재  
의 보급, 전문인력 확보, 재정 지  
원, 교직원 연수 등을 시행 또는  
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 · 제15조 (현행 제15조 및 제  
16조와 같음)

제17조(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



<신 설>

제17조 (생 략)

윤리 의식 제고) ①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정보화 추진에 있어 지능정보사회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윤리원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교육관계자의 지능정보사회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제1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 촉진 및 교육활동에서의 지능정보기술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정보화 추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9조 (현행 제17조와 같음)